한국수출입은행 (개요)

○ 설립목적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함.

○ 기능 및 역할

<1> 공적수출신용기관(ECA)으로서 국가수출 촉진 지원

- 선박 플랜트 등 자본재, IT등 첨단기술 산업에 수출금융 지원
- 해외투자자금, 외국현지법인의 사업자금 및 해외자원개발 금융지원

<2>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를 통한 대 개도국 경제협력 증진

- 개도국 경제개발 원조 사업에 대한 심사, 차관공여계약 체결, 자금집행 및 사후관리
- 공적개발원조(ODA)정책방향 연구

<3> 남북협력기금(IKCF)를 통한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

- 유무상 지원 사업에 대한 심사, 자금집행 및 사후관리
- 북한의 조선무역은행과 함께 청산결제 전담은행으로 지정

○ 연혁

<1> 국제거래 지원 핵심은행으로서의 도약기(2003~ 현재)

- '10.11 연간지원 60조원 돌파
- '09.01 법정자본금 8조원
- '07.02 해외직접투자통계 업무 전반 확대수탁
- '03.12 연간 지원 20조원 돌파

<2> 국제거래 금융지원 전문기관으로 위상 변모기(1991~ 2002)

- 99.11 경영혁신 최우수상 수상
- 98.09 법정자본금 4조원
- 97.12 연간 지원 10조원돌파
- 91.03 남북협력기금(IKCF)수탁

<3> 중화학공업 수출육성기 (1976~ 1990)

- '87.12 법정자본금 1조원
- '87.06 경제협력기금(EDCF)수탁
- '76.07 한국수출입은행 설립(법정자본금 1,500억원)

○ 인터넷 사이트: www.koreaexim.go.kr

해외투자 금융상품 안내

✺ 해외사업, 자원개발, 해외투자. 국내기업 출자 외국법인의 현지사업 자금

✺ 해외투자, 해외사업 및 주요 자원 개발사업 등을 하는 국내기업·해외 현지법인(해외 자회사·손회사) 또는 국내기업 등과 공동투자를 수행하거나 장기구매계약을 체결한 외국기업 등에게 금융(대출 및 채무보증(채권 인수·보증 포함))을 지원.

상 품 명	주 요 내 용
해외투자자금대출	✺ 해외투자를 하거나 외국정부·외국법인에게 국산설비를 대여하는 국내기업에 대한 금융을 제공
해외사업자금대출	✺ 외국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설비를 신설·확충하거나 이를 운영하는 국내기업에 대한 금융을 제공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	✺ 국내기업이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해외 자회사·손회사)의 운영자금, 시설자금 또는 직접투자자금을 제공
장기구매 개발사업 자금	✺ 국내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이 지분출자 없이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자원의 구매계약자로 참여할 경우, 해당 자원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국외 자원개발사업에게 자원개발자금을 대출하는 상품
외국정부 등에 대한 출자자금 대출	✺ 국내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에 직접 출자하거나 자금을 대여하는 외국정부·외국기업에게 금융을 제공
M&A Financing 및 금융주선	✺ 국내기업 및 해외 자회사·손회사의 해외 M&A 금융 주선·제공(협조융자 포함)
외항선박 구매자금 대출	✺ 국내 해운사에게 국내항과 외국항간 또는 외국항간의 해상운송사업에 투입할 선박을 국내 조선소에서 새로이 건조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상품

1 해외투자자금 대출

○ 해외투자자금대출

- 국내기업이 해외직접투자를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

○ 지원대상
- 국내기업이 외국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
- 국내기업이 외국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

○ 대출제한사업
- 기업을 영위하지 않은 개인의 해외투자
- 단순히 배당금, 시세차익, 이자 등을 목적으로 하여 외국의 증권이나 채권 등을 취득하는 해외 간접투자

○ 대출조건

구 분	주 요 내 용
대상기업	✺ 투자예정업종에 대한 사업경력 3년 이상인 국내기업
대출통화	✺ 원화 또는 외화
대출금액	✺ 대기업 : 소요자금의 80% 범위 내 ✺ 중소기업 및 지식경제부 고시 첨단기술 습득을 위한 대출 : 소요자금의 90% 범위 내(자원개발사업: 소요자금의 100% 범위내(기업규모 불문)) ✺ 자원개발사업 : 소요자금의 100% 범위내 (기업규모 무관) * 단, 탐사사업은 신용도 및 대상광종에 따라 소요자금의 70~100% 범위내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율 ✺ 기준금리 :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가능 ✺ 가산율 : 대출기간, 신용등급 및 담보에 따라 차등적용
대출기간	✺ 30년 이내 (거치기간 3년 이내) ✺ 자원개발사업의 경우, 거치기간 7년 이내
채권보전	✺ 차주의 신용 및 사업성 등이 양호한 경우 신용취급 가능 ✺ 기타의 경우는 적격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신용보증서, 부동산, 유가증권, 채권 등의 담보 취득

○ 대출절차

1. 대출상담	지원가능여부상담 기업방문 및 신용조사 해외투자관련 사업계획서, 국내외 관련 인허가 취득여부 검토, 필요시 현지출장
2. 신용평가	지원조건 확정/ 승인신청서류 접수 해외투자신고서, 승인신청서
3. 대출신청	승인절차진행 대출승인에 필요한 기업신용정보, 현지법인관련 정보
4. 대출승인	채권서류 안내 및 접수 대출계약서, 이사회의사록, 인감증명서, 담보관련서류 등
5. 대출계약체결	집행신청서류 접수/ 대출금 송금 대출집행신청서, 입금계좌사본 등
6. 대출 집행	

2 해외사업자금 대출

○ 해외사업자금대출

- 국내기업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설비를 신설, 확충하거나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 대출조건

구 분	주 요 내 용
대상기업	✺ 현지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해외사업을 영위하는 국내기업
대출통화	✺ 원화 또는 외화
대출금액	✺ 대기업 : 소요자금의 80% 범위 내 ✺ 중소기업 : 소요자금의 90% 범위 내(자원개발사업: 소요자금의 100% 범위내 (기업규모 불문)) ✺ 자원개발사업 : 소요자금의 100% 범위내(기업규모 무관) * 단, 탐사사업의 경우, 신용도 및 대상광종에 따라 소요자금의 70~100% 범위내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율 ✺ 기준금리 :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가능 ✺ 가산율 : 대출기간, 신용등급 및 담보에 따라 차등적용
대출기간	✺ 30년 이내 (거치기간 3년 이내) ✺ 자원개발사업의 경우, 거치기간 7년 이내
채권보전	✺ 차주의 신용 및 사업성 등이 양호한 경우 신용취급 가능 ✺ 기타의 경우는 적격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신용보증서, 부동산, 유가증권, 채권 등의 담보 취득

○ 대출절차

1. 대출상담	지원가능여부상담 기업방문 및 신용조사 해외투자관련 사업계획서, 국내외 관련 인허가 취득여부 검토, 필요시 현지출장
2. 신용평가	지원조건 확정/ 승인신청서류 접수 해외투자신고서, 승인신청서
3. 대출신청	승인절차진행 대출승인에 필요한 기업신용정보, 현지법인관련 정보
4. 대출승인	채권서류 안내 및 접수 대출계약서, 이사회의사록, 인감증명서, 담보관련서류 등
5. 대출계약체결	집행신청서류 접수/ 대출금 송금 대출집행신청서, 입금계좌사본 등
6. 대출 집행	

3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

○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

- 국내기업이 출자한 외국법인(해외 자회사·손회사)이 외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설자금, 운영자금 및 직접투자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 특히 정부출자기관인 수출입은행은 이중과세방지협정상 현지국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차주의 차입비용이 절감되는 장점

> ❋ (사례) A 대기업은 중국에 현지생산법인을 설립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A기업의 생산품 판매가 호조세를 보여 중국에 U$7백만 상당의 기계설비를 증설코자 합니다. 이때 A기업의 중국현지법인은 직접 수출입은행으로부터 U$7백만 범위내에서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조건

구 분	주 요 내 용
대상기업	✺ 국내기업이 출자한 외국법인
대출통화	✺ 원화 또는 외화
대출금액	✺ 소요자금의 100% 범위 내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율 ✺ 기준금리 :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가능 ✺ 가산율 : 대출기간, 신용등급 및 담보에 따라 차등적용
대출기간	✺ 30년 이내 ✺ 운영자금 : 3년 이내
채권보전	✺ 차주의 신용 및 사업성 등이 양호한 경우 신용취급 가능 ✺ 기타의 경우는 적격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신용보증서, 부동산, 유가증권, 채권 등의 담보 취득

○ 대출절차

1. 대출상담	지원가능여부상담 기업방문 및 신용조사 해외투자관련 사업계획서, 국내외 관련 인허가 취득여부 검토, 필요시 현지출장
2. 신용평가	지원조건 확정/ 승인신청서류 접수 해외투자신고서, 승인신청서
3. 대출신청	승인절차진행 대출승인에 필요한 기업신용정보, 현지법인관련 정보
4. 대출승인	채권서류 안내 및 접수 대출계약서, 이사회의사록, 인감증명서, 담보관련서류 등
5. 대출계약체결	집행신청서류 접수/ 대출금 송금 대출집행신청서, 입금계좌사본 등
6. 대출 집행	

4 장기구매개발사업자금 대출

○ 장기구매개발사업자금 대출

- 국내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이 지분출자 없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자원의 구매계약자로 참여할 경우, 해당 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국외 자원개발사업자에게 자원개발자금을 대출하는 상품.

> ❋ (사례) 칠레 구리광산 개발기업 A는 칠레 소재 B 구리광산을 개발중에 있으며, 국내 제련업체 C와 향후 B 구리광산에서 생산되는 구리정광의 15%에 대한 판매를 위해 장기구매계약(offtake contract)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경우 A사는 광산 개발사업자금에 대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조건

구 분	주 요 내 용
지원대상	✺ 대상기업 : 국내기업이나 국내기업의 해외현지법인과 자원 장기구매계약을 체결한 국외 자원개발사업자 ✺ 대상자원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상 해외자원
대출통화	✺ 외화 (미달러, 엔, 유로화 등)
대출금액	✺ 소요자금의 100% 이내
대출기간	✺ 30년 이내 (거치기간 7년 이내 포함)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율 ✺ 기준금리 :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가능 ✺ 가산율 : 대출기간, 신용등급 및 담보에 따라 차등적용

○ 대출절차

1. 대출상담	지원가능여부상담 기업방문 및 신용조사 해외투자관련 사업계획서, 국내외 관련 인허가 취득여부 검토, 필요시 현지출장
2. 신용평가	지원조건 확정/ 승인신청서류 접수 해외투자신고서, 승인신청서
3. 대출신청	승인절차진행 대출승인에 필요한 기업신용정보, 현지법인관련 정보
4. 대출승인	채권서류 안내 및 접수 대출계약서, 이사회의사록, 인감증명서, 담보관련서류 등
5. 대출계약체결	집행신청서류 접수/ 대출금 송금 대출집행신청서, 입금계좌사본 등
6. 대출 집행	

5 외국정부 등에 대한 출자자금 대출

○ 외국정부 등에 대한 출자자금대출

- 국내기업이 출자하는 외국법인에 대해 직접 출자하거나 자금을 대여하는 외국정부나 외국기업에게 출자나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상품

> ❋ (사례) 국내기업 A는 캐나다기업 B와 공동으로 마다가스카르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해외사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B사는 마다가스카르 현지법인에 대한 출자자금을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조건

구 분	주 요 내 용
지원대상	✺ 국내기업이 출자하는 외국법인에 대해 직접 출자하거나 자금을 대여하는 외국정부나 외국기업
대출통화	✺ 외화 (미달러, 엔, 유로화 등)
대출금액	✺ 소요자금의 100% 이내
대출기간	✺ 30년 이내 (거치기간 7년 이내 포함)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율 ✺ 기준금리 :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가능 ✺ 가산율 : 대출기간, 신용등급 및 담보에 따라 차등적용

○ 대출절차

1. 대출상담	지원가능여부상담 기업방문 및 신용조사 해외투자관련 사업계획서, 국내외 관련 인허가 취득여부 검토, 필요시 현지출장
2. 신용평가	지원조건 확정/ 승인신청서류 접수 해외투자신고서, 승인신청서
3. 대출신청	승인절차진행 대출승인에 필요한 기업신용정보, 현지법인관련 정보
4. 대출승인	채권서류 안내 및 접수 대출계약서, 이사회의사록, 인감증명서, 담보관련서류 등
5. 대출계약체결	집행신청서류 접수/ 대출금 송금 대출집행신청서, 입금계좌사본 등
6. 대출 집행	

6 M&A FINANCING 및 금융주선

○ M&A FINANCING 및 금융주선

- 우리기업의 해외 M&A사업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M&A FINANCING을 제공하고, 대규모 해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국내외 금융기관의 협조융자 주선 (STRUCTURED FINANCE 포함)

○ 주요업무

M&A Financing	✺ LBO방식 대출(피인수회사의 자산을 선순위 담보로 대출) ✺ 기타 주식·자산 및 영업 양수도 관련 대출
금융주선	✺ 대규모 해외투자 프로젝트 지원(시설·운영자금) ✺ 국내외 금융기관과의 협조융자 주선 ✺ 맞춤형 해외투자프로젝트 Consulting 등(Structured Finance 포함)

7 외항선박 구매자금 대출

○ 외항선박 구매자금대출

- 국적선사가 국내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 외국선사와 대등한 조건으로 소요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 수출입은행은 국내 해운회사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해외 선주로부터의 선박 용선에 따른 외화유출 방지 및 국내 조선소의 안정적인 수주물량 확보 등을 위하여 '03년 1월 외항선박 구매자금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 ❋ (사례) 외국항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국내선사(또는 그 SPC*)인 A사가 국내조선소에 컨테이너선 2척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A사는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총계약금액의 80%이내에서 선박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 SPC: Special Purpose Company

○ 대출조건

구 분	주 요 내 용
지원대상	✺ 국내 해운회사(선박투자회사 포함) 또는 그 SPC가 구매하는 선박 중 ①*외항선박*[주1], ②화물운송선박, ③국내조선소에서 신규로 건조하는 선박
대상기업	✺ 국내선사 또는 그 SPC(Special Purpose Company)
대출한도	✺ 수출계약금액의 80% 이내 ✺ 건조 기간 중 이자 및 금융비용은 별도로 추가지원 가능
선수금률	✺ 수출계약금액의 20% 이상
대출기간	✺ 선박 인도 후 12년 이내
대출통화	✺ 원화 또는 외화 (미달러, 엔, 유로화등)로 가능
대출금리	✺ CIRR + 대외대출프리미엄 ✺ CIRR + 신용위험 가산율 (국내 해운사에게 직접대출하는 경우)
상환방법	✺ 연 1회 이상 원금균등분할상환
채권보전	✺ 선박저당권 취득 ✺ 프로젝트관련 계약상 권리에 대한 양도담보 ✺ 선박관련 보험계약 (선체보험, 전쟁위험보험, 선주책임상호보험 등)상 차주의 권리 ✺ 장기운송계약상 차주의 권리 ✺ 선수금환급보증서상 차주의 권리 양도담보

주1) 외항선박 : 국내항과 외국항간 또는 외국항간 해외 운송사업에 투입되는 선박을 지칭. 이에 따라 내항선박, 여객운송선박,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선박 및 중고선 등은 수은의 외항선박금융의 지원대상 거래에서 제외

○ 대출절차

1. 대출상담	지원가능여부상담 기업방문 및 신용조사 해외투자관련 사업계획서, 국내외 관련 인허가 취득여부 검토, 필요시 현지출장
2. 신용평가	지원조건 확정/ 승인신청서류 접수 해외투자신고서, 승인신청서
3. 대출신청	승인절차진행 대출승인에 필요한 기업신용정보, 현지법인관련 정보
4. 대출승인	채권서류 안내 및 접수 대출계약서, 이사회의사록, 인감증명서, 담보관련서류 등
5. 대출계약체결	집행신청서류 접수/ 대출금 송금 대출집행신청서, 입금계좌사본 등
6. 대출 집행	

○ 분야별 담당자 연락처 안내

해외투자금융부	02-3779-6427, 6429, 6459
플랜트금융부	02-3779-6410
녹색성장금융부(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02-3779-6394, 6460
녹색성장금융부(원자력에너지)	02-3779-6466, 6473
녹색성장금융부(에너지효율향상-LED, 2차전지 등)	02-3779-5376~7
녹색성장금융부(환경산업-담수화, 수처리, 탈황 등)	02-3779-5377
자원금융부(광물, 임업)	02-3779-6425
자원금융부(원유, 천연가스, 농업)	02-3779-6445
미래산업금융실(지식・문화 콘텐츠 산업)	02-3779-5264~5
미래산업금융실(방위 산업)	02-3779-5263, 5267
선박금융부	02-3779-6333, 6324, 6326

수출금융상품 안내

상 품 명	주 요 내 용
중장기 수출금융	✺ 수출물품 인도 후 최종 결제시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대규모 자본재 등을 수출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국내 수출자에게 지원
해외수출자앞 직접대출	✺ 외국 구매자(수입자)가 국내기업으로부터 수입대금 결제기간이 2년 이상인 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 그 수입에 필요한 자금을 외국의 구매자에게 직접 대출해주는 상품
포괄수출금융	✺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과거 수출실적 범위 내에서 자금용도의 특정 수출거래에 대한 제한없이 일괄 대출하는 상품
단기수출자금대출	✺ 수출대금이 수출물품 인도 후 2년 이내에 결제되는 수출거래에 대하여 수출물품의 제작 및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상품
수출중소기업 특례신용대출	✺ 신용도와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소규모 수출거래에 대하여 수출이행능력과 수출거래 안정성만을 간단히 평가하여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신용으로 대출하는 상품
기술개발용 수출자금대출	✺ 수출기업의 수출물품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소요되는 기술개발(R&D)자금을 대출하는 상품
해외시장개척자금 대출	✺ 수출기업의 해외시장개척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출하는 상품
시설확장증설용 수출자금대출	✺ 수출기업의 수출물품 생산을 위한 시설 확장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출하는 상품
반출지원자금대출	✺ KOTRA 해외공동물류센터에 수출물품을 사전 반출하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하여 수출물품의 제작 및 반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
수출용원자재공급 팩토링금융	✺ 신용도가 양호하지 않거나 제공할 담보가 부족하여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는 중소기업이 수출자 앞으로 수출용 원자재를 공급함으로써 보유하게 되는 외화표시 매출채권을 추가적인 담보 없이 무소구조건으로 매입하는 대출상품

1 중장기 수출금융

○ 중장기 수출자금대출(제작·연불금융)

- 인도 후 수출대금 결제간 시차가 있는 대규모 자본재 등의 수출거래에 대하여 수출 물품의 제작 및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

❋ (사례) A기업은 △억불 규모의 플랜트를 수출하는 기업으로 계약대금을 공정진행률(기성고 방식)에 따라 수입자로부터 지급받을 예정(일람불결제)입니다. 이 경우 당행의 제작금융(수출물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추후 수입자로부터 회수한 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됩니다.

❋ (사례) B기업은 △억불 규모의 플랜트를 수출하는 기업으로, 수입자가 대금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결제(연불결제)하기를 원하는 경우, 수입자 앞 물품인도 후 최종 수출대금 결제 시까지의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당행의 연불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추후 수입자로부터 회수한 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됩니다

○ 대출 조건

구 분	주 요 내 용
대상기업	❋ 제작금융 : 지원대상 물품의 수출자, 생산자 및 원자재공급자 ❋ 연불금융 : 중장기 수출거래를 추진하는 국내기업
대출방식	❋ 제작금융 : 수출물품의 제작에 필요한 자금지원 ❋ 연불금융 : 수출물품 인도 후 외상수출대금 회수시까지 자금지원
대출한도	❋ 제작금융 : '수출계약금액 - 이미 받은 금액'의 90% 범위내 ❋ 연불금융 : '수출계약금액 - 기준선수금*'의 100% 범위내 (건설기간중 이자 등에 대한 추가 지원 가능)
대출통화	❋ 원화 또는 외화 (미달러, 엔, 유로화등)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율 ❋ 기준금리 :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가능 ❋ 가산율 : 대출기간, 신용등급 및 담보에 따라 차등적용
대출기간	❋ 제작금융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수출물품의 인도완료일 또는 최종수출대금 결제기일에 30일을 가산한 기간 이내 ❋ 연불금융 : 대출취급일로부터 관련거래에 대한 지급보증서 또는 관계계약서에 약정된 분할상환일*에 30일을 가산한 기간 이내 * 선박·항공기·발전설비(12년 이내), 신재생에너지·수력·핵발전설비(18년 이내), PF방식 거래(14년 이내), 기타(OECD 협약에 정하는 국가 분류에 따라 고소득국 5년 이내, 기타국 10년이내)
채권보전	❋ 제작금융 : 신용 또는 지급·신용보증서, 부동산, 유가증권 등 ❋ 연불금융 : 신용 또는 신용이 양호한 금융기관, 수입국 정부기관 또는 중앙은행이 발행·확인한 지급 보증서 또는 신용장
상환방법	❋ 제작금융 : 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 ❋ 연불금융 : 정기균등분할상환* * 선박 연 1회 이상 또는 기타품목 연 2회 이상

○ 대출 절차

1. 대출상담	지원가능여부상담 기업방문 및 신용조사 재무재표 및 수출입실적 확인서류, 해외투자사업계획서 수출계약서 등
2. 신용평가	지원조건 확정/ 승인신청서류 접수 대출승인신청서
3. 대출신청	승인절차진행 대출승인에 필요한 기업신용정보
4. 대출승인	채권서류 안내 및 접수 대출계약서, 이사회의사록, 인감증명서, 담보관련서류 등
5. 대출계약체결	집행신청서류 접수/ 대출금 송금 대출집행신청서, 입금계좌사본 등
6. 대출 집행	

2 해외수입자앞 직접대출

가. 직접대출

○ 직접대출

- 외국의 구매자가 국내기업으로부터 일람불결제조건으로 상품을 수입하되 수출계약대금은 연불금융 대출금으로 조달하며 완공후 장기간에걸쳐 분할상환하는 경우, 그 수입에 필요한 자금을 외국인 구매자에게 직접대출해 주는 제도

> ❋ (사례) A기업은 1억불 규모의 플랜트를 수출하는 기업으로 수입자는 수출 계약대금을 완공후 장기간에 걸쳐 분할상환하는 조건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적수출신용기관(ECA)인 당행은 해외 수입자에게 수출대금을 대출하고 동 자금으로 수입자는 수출물품 인도시까지 수출자앞 계약대금을 우선 지급하므로, 수출대금 회수에 대한 걱정 없이 수출자는 수출계약의 이행만 집중하면 됩니다.

○ 대출조건

구 분	주 요 내 용
대상기업	✺ 수출목적물을 수입하는 외국정부(외국의 정부기관과 지방공공단체 포함) 또는 외국인(외국의 법률에 의거 설립된 법인 포함)
대출금액	✺ '수출계약금액 - 기준선수금*' 100% 범위내 (건설기간중 이자 등에 대한 추가 지원 가능) * 선박의 경우 수출계약금액의 20%, 선박 외의 경우 수출계약금액의 15%
대출금리	✺ 고정금리 : 기준금리(CIRR)+가산율 ✺ 변동금리 : 기준금리(KORIBOR/LIBOR)+ 가산율 * OECD협약에 따른 대외대출프리미엄 징수
대출기간	✺ 인출기간 + 상환기간 - 인출기간은 수출물품의 제작기간, 완공 등을 감안 - 상환기간은 OECD 수출신용협약 내용, 수출물품의 거래규모, 판매계획 및 내용연수 등에 비추어 결정 * 선박·항공기·발전설비(12년 이내), PF방식 거래(14년 이내), 신재생에너지·수력·핵발전 설비(18년 이내), 기타(OECD 협약에 정하는 국가 분류에 따라 고소득국 5년 이내, 기타국 10년이내)
채권보전	✺ 차주국의 정부, 중앙은행 또는 적격보증기관이 발행하거나 작성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 ✺ 차주국의 정부, 중앙은행 또는 적격보증기관이 발행(확인)한 취소불능신용장 또는 지급보증서 ✺ 차주 또는 보증인의 신용이 양호하여 채권보전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신용대출 가능
상환방법	✺ 정기균등분할상환* * 선박 연 1회 이상 또는 기타품목 연 2회 이상

○ 대출절차

1. 대출상담	지원가능여부상담 기업방문 및 신용조사 재무재표 및 수출입실적 확인서류, 해외투자사업계획서 수출계약서 등
2. 신용평가	지원조건 확정/ 승인신청서류 접수 대출승인신청서
3. 대출신청	승인절차진행 대출승인에 필요한 기업신용정보
4. 대출승인	채권서류 안내 및 접수 대출계약서, 이사회의사록, 인감증명서, 담보관련서류 등
5. 대출계약체결	집행신청서류 접수/ 대출금 송금 대출집행신청서, 입금계좌사본 등
6. 대출 집행	

나. 프로젝트 파이낸스

○ 프로젝트 파이낸스

- 프로젝트에서 창출되는 현금흐름을 주요 상환재원으로 하고 관련 자산·권리 등으로 신용을 보강하는 금융기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또는 기업 등의 직접적인 지급보증을 요구하지 않아 발전·원유/가스·석유화학 등 대규모 프로젝트 자금조달에 적합한 제도.
  · 사업주의 대차대조표에 차입금으로 계상되지 않는 off balance-sheet financing
  · 사업주앞 직접적인 채무상환부담이 없이 기약정한 책임범위내에서 책임을 진다는 의미의 non-recourse(무소구) 혹은 limited-recourse financing(제한소구금융)

○ 전형적인 PF관련 계약상 구조

○ 지원대상

- 수출, 해외투자, 자원개발 등을 통한 국내기업의 상당한 사업참여 수준
-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하므로 사업성이 충분히 인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 컨설턴트를 고용하여 충실한 심사 수행
- 사업주, 차주, 수출자, 원료공급자, 제품구매자, 운영자, 사업소재국 정부 등 프로젝트 참여 당사자의 사업수행경험이 풍부하고 신용이 양호하며 전체적으로 리스크가 적절히 분담되어야 함.
- 사업주 출자지분 및 대출원리금상환계수 등 프로젝트 재무지표가 양호한 수준임이 인정되어야 함.

- 다른 ECA, 국제개발금융기구, 국제상업은행, 현지금융 등과 공동 지원하는 거래로서, 수출입은행은 선순위채권자와 동등 지위
- 사업소재국 법규상 외화환전과 송금 등이 보장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정부로부터 관련 보장 확약

○ 대출조건

구 분	주 요 내 용
지원대상	국내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수입하는 국외기업 국내기업이 출자한 국외기업
대출한도	총투자금액, 수출계약금액 및 한국산 기자재금액, 한국기업 출자지분 등 고려하여 결정하되, 건설기간 중 이자 및 금융비용은 별도로 추가지원 가능
대출기간	기준금리+가산율 (기간, 신용도 및 담보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 지원대상거래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하여 결정
대출금리	지원대상거래의 리스크 구조, 시장금리 등을 감안하여 결정
상환방법	지원대상거래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하여 결정
채권보전	프로젝트회사의 자산(토지, 설비, 건물, 금융자산 등)에 대한 담보 취득 프로젝트 관련 계약상 차주 또는 사업주의 권리에 대한 양도담보 취득 차주 발행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 취득 보험청구권(재보험 포함)에 대한 양도담보 취득 사업소재국 정보 또는 사업주의 사업지원보증, 또는 확약서

○ 대출절차

1. 대출상담	기본프로젝트 구조검토 / 기본금융구조 검토/ 대출의향서 제공(필요시)
2. 신용평가	위험요인 확인 및 경감방안 적용 / SECURITY PACKAGE 협의 / TERM SHEET 협상 / DOCUMENTATION 대출승인신청서
3. 대출승인	대출계약체결 선행조건서류 징구 대출계약서, 이사회의사록, 인감증명서, 담보관련서류 등
4. 대출승인	집행신청서류 접수/ 대출금 송금 대출집행신청서, 입금계좌사본 등

다. 선박 스트럭쳐드 파이낸스

○ 선박 스트럭쳐드 파이낸스

- 선박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Cash flow)을 주된 채권보전장치로 하고 본선담보 등을 추가적인 신용보강장치로 하여 외국 선주에게 선박구매자금을 직접 대출하는 맞춤형 선박금융.
  · 선박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으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project finance의 일종
  · 대출금으로 구입한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asset based finance

> ※ (사례) A 외국 컨테이너 선사는 국내 조선사 B앞으로 13,000TEU급 컨테이선 2척을 발주하고 수출입은행 앞으로 자금지원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수출입은행은 OECD 가이드라인(총 프로젝트 비용의 80%)에 따라 240백만불까지 외국 컨테이너선사 앞으로 직접대출 지원이 가능합니다.

○ 대출 조건

구 분	주 요 내 용
지원대상	해외선주가 발주하여 국내 조선소에서 신규 건조하는 선박
대상기업	국외선사 또는 국외선사가 설립한 SPC(Special Purpose Company)
대출한도	수출계약금액의 80% 이내 건조 기간 중 이자 및 금융비용은 별도로 추가지원 가능
선수금[주1]률	수출계약금액의 20% 이상
외화가득률[주2]	수출계약금액의 25% 이상
대출기간	선박 인도 후 12년 이내
대출통화	원화 또는 외화 (미달러, 엔, 유로화등)로 가능
대출금리	CIRR[주3] + 대외대출프리미엄 금리정보
상환방법	연 1회 이상 원금균등분할상환
채권보전	본선담보 및 용선료 수입 양도담보 등

주1) 선수금 : 수출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목적물의 인도 완료 시까지 수령하는 금액
주2) 외화가득률 : 수출계약금액에 대한 외화가득액의 비율
주3) CIRR(Commercial Interest Reference Rate) : 표시통화국가의 국채 수익률에 1%를 가산한 수준

○ 대출절차

1. 대출상담	지원가능여부상담 기업방문 및 신용조사 재무재표 및 수출입실적 확인서류, 해외투자사업계획서 수출계약서 등
2. 신용평가	지원조건 확정/ 승인신청서류 접수 대출승인신청서
3. 대출신청	승인절차진행 대출승인에 필요한 기업신용정보
4. 대출승인	채권서류 안내 및 접수 대출계약서, 이사회의사록, 인감증명서, 담보관련서류 등
5. 대출계약체결	집행신청서류 접수/ 대출금 송금 대출집행신청서, 입금계좌사본 등
6. 대출 집행	

3 포괄수출금융대출

○ 포괄수출금융대출

- 수출물품을 생산하거나 수출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과거 수출실적 범위내에서 자금용도를 특정 수출거래에 한정하지 않고 일괄 대출해주는 제도.
- 포괄수출금융은 대출기간에 따라 단기포괄수출금융(6개월)과 중기포괄수출금융(1년)으로 구분.

※ (사례) A 중소기업은 전자제품을 수출(직수출, 로컬수출)하는 기업으로 과거 6개월간의 수출실적은 U$3백만입니다. 이 경우 A사는 과거 6개월간의 수출실적 증빙자료(U$3백만)를 바탕으로 단기포괄수출금융 U$2.7백만(수출실적의 90% 범위내)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조건

구 분	주 요 내 용
대상기업	✺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 · 중견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대기업 제외 ✺ 수출실적 : 직접 해외수출하였거나 수출물자 또는 수출용원자재를 공급한 실적
대출통화	✺ 원화 또는 외화 (미달러, 엔, 유로 등)로 가능 ✺ 원화, 미달러화, 엔화 또는 유로화표시 대출시, 고객기업이 요청하는 경우 환율 변동위험을 줄여주기 위한「통화전환옵션」과 「환율상환옵션」을 부여할 수 있음.
대출한도	✺ 단기포괄수출금융 : 수출실적의 90% (녹색성장산업 또는 신성장동력산업의 수출거래를 하거나 은행이 정하는 국내외 외부인증으로 기술력을 인증받은 중소기업 등은 100% 범위내) ✺ 중기포괄수출금융 : 수출실적의 50% (중소기업 및 우대중견기업은 70%, 녹색성장산업 및 신성장동력 산업에 해당하는 품목은 100%) 단, 기업당 250억원 (단, 중소기업은 150억원) 이내 다만, 수출규모 등에 따라 500억원 (단, 중소기업은 300억원) 까지 증액 가능
대출기간	✺ 단기포괄수출금융 : 6개월 ✺ 중기포괄수출금융 : 1년 - 기간만료시, 상환하지 않고 재대출 가능 - 중기포괄수출금융 이용기업의 경우 대출기간 중 대출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 상환 후 대출한도 범위내에서 총 6회이내 재인출 가능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율 ✺ 기준금리 :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가능 ✺ 가산율 : 대출기간, 신용등급 및 담보에 따라 차등적용 금리정보
채권보전	✺ 우량기업 : 신용대출 ✺ 기 타 : 지급보증서, 부동산, 유가증권 등

○ 대출 절차

1. 대출상담	지원가능여부상담 기업방문 및 신용조사 재무재표 및 수출입실적 확인서류, 해외투자사업계획서 수출계약서 등
2. 신용평가	지원조건 확정/ 승인신청서류 접수 대출승인신청서
3. 대출신청	승인절차진행 대출승인에 필요한 기업신용정보
4. 대출승인	채권서류 안내 및 접수 대출계약서, 이사회의사록, 인감증명서, 담보관련서류 등
5. 대출계약체결	집행신청서류 접수/ 대출금 송금 대출집행신청서, 입금계좌사본 등
6. 대출 집행	

4 단기수출자금

○ 단기수출자금대출

- 수출대금이 수출물품 인도 후 2년 이내에 결제되는 단기수출거래* 에 대해 수출물품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자금 및 수출물품 선적 후 최종수출대금 결제기일까지 묶이는 유동성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 선박 및 플랜트 제외

- 동일한 수출계약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출기업의 경우, 과거 수출실적 및 수출예상규모를 감안하여 연간 회전한도를 설정한 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 (사례) A기업은 글로벌 자동차기업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자동차 부품을 제작하는데 1개월이 소요되며, 수출품 선적 3개월 후 수출대금을 받고 있습니다. 동사는 수입자와 U$3백만의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동 수출계약을 바탕으로 수출계약금액에서 이미 받은 금액 U$1백만을 뺀 U$2백만의 한도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조건

구 분	주 요 내 용
지원대상 품목	✺ 모든 품목(전기전자, 부품, 기계류, 운수장비, 섬유 등) * 선박과 플랜트 제외
대출금액	✺ '수출계약금액 - 이미 받은 금액' 범위 내 * 지식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우 수출계약금액이 확정되는 않은 런닝 로열티(running royalty) 방식의 판권수출계약에 대한 대출금액은 총제작비에서 홍보비용 등을 제외한 순제작비의 50% 이내
대출통화	✺ 원화 또는 외화
대출기간	✺ '수출대금 결제기일 + 30일' 이내 (단, 2년 미만)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율 ✺ 기준금리 :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가능 ✺ 가산율 : 대출기간, 신용등급 및 담보에 따라 차등적용
회전한도 설정	✺ 수출자의 과거 수출실적 및 수출예상규모 등을 감안하여 회전한도를 설정한 후 개별거래별로 신속하게 대출가능 ✺ 회전한도 사용기간 : 1년

○ 대출절차

1. 대출상담	지원가능여부상담 기업방문 및 신용조사 재무재표 및 수출입실적 확인서류, 해외투자사업계획서 수출계약서 등
2. 신용평가	지원조건 확정/ 승인신청서류 접수 대출승인신청서
3. 대출신청	승인절차진행 대출승인에 필요한 기업신용정보
4. 대출승인	채권서류 안내 및 접수 대출계약서, 이사회의사록, 인감증명서, 담보관련서류 등
5. 대출계약체결	집행신청서류 접수/ 대출금 송금 대출집행신청서, 입금계좌사본 등
6. 대출 집행	

5 수출중소기업 특례신용대출

○ 수출중소기업 특례신용대출

- 신용도 또는 담보력이 취약한 수출중소기업의 소규모 수출거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출이행능력과 수출거래의 안전성을 평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 (사례) C 중소기업은 자동차부품을 수출하고 있는 자기자본 20억원인 기업으로, 최근 미국 거래업체와 U$1백만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경우 C사는 수출이행능력과 수출거래 안전성을 인정받으면 신용으로 U$0.9백만(수출계약금액의 90% 범위내)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조건

구 분	주 요 내 용
지원대상거래	✺ 수출자의 수출이행능력과 해당 수출거래의 안전성을 평가 하여 그 평가 결과가 일정기준을 상회하는 수출거래 ※ 다만, 다음 각 호의 수출거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수출목적물을 단순히 구매하여 수출하는 수출거래 - 본지사(현지법인 포함)간 D/A, D/P 등의 무신용장 결제방식의 수출거래 - 단기 또는 중기포괄수출금융을 이용중인 기업의 수출거래 등
대출통화	✺ 원화 또는 외화 (미달러, 엔, 유로화 등)로 가능 ✺ 원화, 미달러, 엔화 또는 유로화표시 대출시, 고객기업이 요청하는 경우 환율변동위험을 줄여주기 위한「통화전환옵션」과 「환율상환옵션」을 부여할 수 있음.
대출한도	✺ 기업별 : 20억원 (단, 자기자본의 100% 이내) ✺ 거래별 : 적격금융기관 신용장거래 20억원 (다만, 수출계약금액에서 이미 수령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의 90% 범위 내) - 이행성 보증거래 20억원 등
대출기간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수출대금 결제기일 + 15일' 이내로 하되, 6월 미만 (단, 이행성보증은 1년 미만)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율 ✺ 기준금리 :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가능 ✺ 가산율 : 대출기간, 신용등급 및 담보에 따라 차등적용
채권보전	✺ 신용대출 (단, 연대보증 입보, 수출대금채권 및 수출 목적물 양도담보)
회전한도 설정	✺ 주요 구매자별 한도 구분설정 또는 다수 구매자 대상 한도 설정 가능 ✺ 회전한도 사용기간 : 1년
평가기준	✺ 수출거래의 안전성 평가사항 - 수입자의 신용등급, 자기자산 등 신용도 - 장단기 공급계약 여부 - 적격신용장 여부 및 결제조건 등 - 예외적으로 수출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하는 수출거래 · 수출입은행이 인정한 적격금융기관의 취소불능신용장방식 수출거래 · 수출입은행이 인정한 적격구매자와의 수출거래 ✺ 수출이행능력 평가사항 - 수출경력, 기업형태 등 일반사항 - 제조시설 보유 여부 및 가동상황 등 제작능력 -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 재무안정성

○ 대출절차

1. 대출상담	지원가능여부상담 기업방문 및 신용조사 재무재표 및 수출입실적 확인서류, 해외투자사업계획서 수출계약서 등
2. 신용평가	지원조건 확정/ 승인신청서류 접수 대출승인신청서
3. 대출신청	승인절차진행 대출승인에 필요한 기업신용정보
4. 대출승인	채권서류 안내 및 접수 대출계약서, 이사회의사록, 인감증명서, 담보관련서류 등
5. 대출계약체결	집행신청서류 접수/ 대출금 송금 대출집행신청서, 입금계좌사본 등
6. 대출 집행	

6 기술개발용 수출자금대출

○ 기술개발용 수출자금대출

- 연구설비의 설치, 연구개발용 기구 및 기자재 구입비, 시험생산시설 운전자금 등 수출물품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R&D)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

※ (사례) A 중견기업은 냉장고용 모터를 생산·판매하는 업체로, 기존 모터를 대체하는 고효율, 저소음의 차세대 모터를 개발하여 세계 냉장고 모터 시장을 선점하고자 신제품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A사는 개발된 제품을 판매할 경우 매출액의 30% 이상을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사는 본 기술개발 인건비 등 연구개발비, 각종 기자재 비용, 연구설비 비용 등을 기술개발에 필요한 실소요자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50억원(연구설비 포함시 연구시설 구입비 50억원 추가 지원 가능)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조건

구 분	주 요 내 용
대상기업	✺ 녹색성장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수출거래 중소·중견기업 ✺ 수출입은행이 선정한 히든챔피언 육성대상기업 ✺ 바이오·의료부문 신약 및 바이오시밀러 개발 기업
대상요건	✺ 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연구설비의 설치, 연구개발용 기구 및 기자재 구입비, 자체 및 위탁 R&D 비용, 기술도입비, 시험생산시설 운영자금 * 기술개발 완료시점의 1년 이후 최초 도래하는 차주의 회계연도부터 해당 물품의 연간 매출액의 30% 이상 수출될 것으로 전망되는 경우 지원 * 바이오·의료부문 신약 또는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는 수출목적의 해외임상 3상을 추진하거나 수출계약이 체결된 기술개발에 한함
대출한도	✺ 실소요자금의 90% 이내. 단, 기업규모별로 아래와 같이 대출한도 차등 - 중견기업 : 50억원 이내 (연구설비 포함 시 연구시설 구입비 50억원 추가 지원 가능) - 중소기업 : 30억원 이내 (연구설비 포함 시 연구시설 구입비 20억원 추가 지원 가능) - 바이오·의료부문 신약 또는 바이오시밀러 개발기업 : 1,000억원 * 단, 동일 기술개발과 관련된 정부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경우는 그 금액을 대출한도에서 제외
대출통화	✺ 원화 또는 외화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율 ✺ 기준금리 :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가능 ✺ 가산율 : 대출기간, 신용등급 및 담보에 따라 차등적용
대출기간	✺ 대출취급일로부터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 이내 가능)
상환방법	✺ 연 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 (단, 3년 이하 대출인 경우 만기일시상환 가능)

○ 대출절차

1. 대출상담	지원가능여부상담 기업방문 및 신용조사 재무재표 및 수출입실적 확인서류, 해외투자사업계획서 수출계약서 등
2. 신용평가	지원조건 확정/ 승인신청서류 접수 기술평가기관의 기술 평가서, 대출승인신청서
3. 대출신청	승인절차진행 대출승인에 필요한 기업신용정보
4. 대출승인	채권서류 안내 및 접수 대출계약서, 이사회의사록, 인감증명서, 담보관련서류 등
5. 대출계약체결	집행신청서류 접수/ 대출금 송금 대출집행신청서, 입금계좌사본 등
6. 대출 집행	

7 해외시장 개척자금 대출

○ 해외시장 개척자금대출

- 해외시장조사, 전시회 참가, 해외바이어 발굴, 해외네트워크 구축 등 수출촉진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

> ❋ (사례) A 중견기업은 풍력발전 부품을 수출(전년도 수출실적 120억원)하는 기업으로,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중국 내 미디어 광고 활동, 쥬얼리 관련 국제전시회 참석 등을 통하여 홍보 및 수출계약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A사는 바이어 발굴을 위한 출장 비용, 전시회 등 참가비용, 해외홍보를 위한 미디어 광고비 등의 용도로 해외시장 개척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동사의 수출실적을 고려할 때 30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조건

구 분	주 요 내 용
대상기업	✺ 녹색성장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수출거래 중소 · 중견기업 ✺ 수출입은행이 선정한 히든챔피언 육성대상기업
대상요건	✺ 해외시장조사, 해외진출컨설팅, 해외바이어 발굴, 전시회 · 박람회 · 세미나 참가, 해외홍보 활동, 해외네트워크 구축 등 수출촉진을 위한 해외시장개척활동
대출한도	✺ 전년도 수출실적의 1/3 이내 단, 중견기업은 30억원, 중소기업은 20억원 이내 * 중소기업청의 '수출기업화사업', 한국무역협회의 '무역기금(해외시장개척자금용) 융자'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해외시장개척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대출한도에서 제외
대출통화	✺ 원화 또는 외화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율 - 기준금리 :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가능 - 가산율 : 대출기간, 신용등급 및 담보에 따라 차등적용
대출기간	✺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가능)
상환방법	✺ 연 2회 이상 정기분할상환 (단, 2년 이하 대출인 경우 만기일시상환 가능)

○ 대출절차

1. 대출상담	지원가능여부상담 기업방문 및 신용조사 재무재표 및 수출입실적 확인서류, 해외투자사업계획서 수출계약서 등
2. 신용평가	지원조건 확정/ 승인신청서류 접수 기술평가기관의 기술 평가서, 대출승인신청서
3. 대출신청	승인절차진행 대출승인에 필요한 기업신용정보
4. 대출승인	채권서류 안내 및 접수 대출계약서, 이사회의사록, 인감증명서, 담보관련서류 등
5. 대출계약체결	집행신청서류 접수/ 대출금 송금 대출집행신청서, 입금계좌사본 등
6. 대출 집행	

8 시설확장 · 증설용 수출자금 대출

○ 시설확장·증설용 수출자금대출

- 수출기업의 수출물품 생산을 위한 시설 확장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 (사례) B 기업은 자동차부품을 수출하는 수출입은행 히든챔피언 육성대상기업으로 신규 수주한 물량을 생산하기 위해 기존공장 증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B사는 부지매입, 공장건설 설비 구입 등에 필요한 총 소요자금 100억원 중 80%인 80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조건

구 분	주 요 내 용
대상기업	✺ 녹색성장산업 및 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수출거래 기업 ✺ 수출입은행이 선정한 히든챔피언 육성대상기업
대상요건	✺ 수출입은행 지원대상 시설에서 발생한 연간 매출액의 30% 이상이 수출되는 경우로서 ✺ 신규공장 건설, 기존 공장의 증축 및 개·보수 ✺ 기계류 및 각종 설비구입·설치를 통한 시설 확장 또는 증설 등 (단, 시설재 수입의 경우,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입자금 대출 지원대상 물품 등'에 한함)
대출한도	✺ 실 소요자금의 80% 이내 ※ 신용보증서 또는 지급보증서 담보 제공시 실 소요자금의 100%까지 가능
대출통화	✺ 원화 또는 외화 (미달러, 엔, 유로 등)로 가능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율 ✺ 기준금리 :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가능 ✺ 가산율 : 대출기간, 신용등급 및 담보에 따라 차등적용 금리정보
대출기간	✺ 대출취급일로부터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 이내 가능) ※ 다만, 법인세법시행규칙 상의 고정자산 내용연수 이내
상환방법	✺ 연 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 (3년 이하 대출은 일시상환 가능)

○ 대출절차

1. 대출상담	지원가능여부상담 기업방문 및 신용조사 재무재표 및 수출입실적 확인서류, 해외투자사업계획서 수출계약서 등
2. 신용평가	지원조건 확정/ 승인신청서류 접수 대출승인신청서
3. 대출신청	승인절차진행 대출승인에 필요한 기업신용정보
4. 대출승인	채권서류 안내 및 접수 대출계약서, 이사회의사록, 인감증명서, 담보관련서류 등
5. 대출계약체결	집행신청서류 접수/ 대출금 송금 대출집행신청서, 입금계좌사본 등
6. 대출 집행	

9 반출지원자금 대출

○ 반출지원자금대출

- 물류부담 경감을 위해 KOTRA 해외공동물류센터(이하 'KOTRA 물류센터') 앞 수출물품을 사전 반출하는 수출중소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 대형 수입업체들이 수출중소기업에게 즉시 납품이 가능한 현지 물류창고(VMI, Vendor Managed Inventory)*를 요구하는 경우, 자체 해외물류창고 운영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KOTRA물류센터를 이용하는 수출중소기업이 수출계약 체결전 KOTRA물류센터 앞 수출물품의 사전반출로 인해 겪게 되는 자금부담을 덜어주는 대출제도.

  * 대형 생산업체들이 재고부담회피를 통하여 생산코스트를 인하하기 위하여 납품업체에게 원자재 재고관리 부담을 전가시키는 재고관리시스템

○ 대출조건

구 분	주 요 내 용
지원대상	✺ KOTRA물류센터 앞으로 수출물품을 사전 반출하는 수출중소기업
지 원 적 격 요건	✺ 기본전제 : 해외 거래처와의 반복적 거래 ✺ 지원요건 : 차주와 해외수입자간에 다음 조건중 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지속적인 고정거래관계가 있을 것 ① 거래기간 : 3년이상 ② 수출계약 체결 회수 : 연간 4회 이상 ③ 수출규모 : 연간 U$1백만 이상 * 해외수입자는 수출입은행 소정 신용등급 충족 요망
지원방식	✺ 반출 건별 지원 또는 1개월 이내 반출되는 거래 일괄 지원
대출한도	✺ 최근 6개월 KOTRA물류센터를 통한 월평균 수출실적의400% 이내 (단, KOTRA물류센터 최초 이용시 최근 6개월 KOTRA물류센터 소재지역 고정 거래처 앞 월평균 수출실적의 200% 이내 ✺ 회전한도 방식으로 운용하며, 회전한도 사용기간은 2년 이내
대출금액	✺ 차주의 신용등급별로 반출금액의 70%~100%이내
대출기간	✺ 대출집행일로부터 수출대금 입금일에 5영업일을 가산한 기간(단, 1년 이내)
대출통화	✺ 수출대금 결제통화(미달러화, 일본엔화, 유로화, 영국파운드화, 스위스프랑화) ✺ 대출 취급후 수출대금 결제통화가 변경된 경우, 1회에 한하여 대출표시통화를 전환할 수 있는 통화전환옵션 무상 부여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율 ✺ 기준금리 :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가능 ✺ 가산율 : 대출기간, 신용등급 및 담보에 따라 차등적용

○ 대출절차

1. 대출상담	지원가능여부상담 기업방문 및 신용조사 재무재표 및 수출입실적 확인서류, 해외투자사업계획서 수출계약서 등
2. 신용평가	지원조건 확정/ 승인신청서류 접수 대출승인신청서
3. 대출신청	승인절차진행 대출승인에 필요한 기업신용정보
4. 대출승인	채권서류 안내 및 접수 대출계약서, 이사회의사록, 인감증명서, 담보관련서류 등
5. 대출계약체결	집행신청서류 접수/ 대출금 송금 대출집행신청서, 입금계좌사본 등
6. 대출 집행	

10 수출용원자재공급 팩토링 금융

○ 수출용원자재공급 팩토링금융

- 수출용원자재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수출자에 대하여 보유한 외화매출채권을 무소구(Without Recourse)조건*으로 매입하는 수출금융상품.
  * 무소구조건(Without Recourse): 수출자가 만기일에 수출대금을 상환하지 못하더라도 수출용원자재 공급기업에게 수출대금을 청구하지 않는 조건

- 수출용원자재공급 팩토링금융의 이점
  · 신용이 부족하거나 담보가 없어도 이용 가능.
  · 공급대금을 저렴한 비용으로 조기 회수가능, 금리·환율변동위험 최소화 가능.
  · 공급대금 회수위험 제거 가능
  · 동 금융은 차입금으로 계상되지 않으므로 재무구조 개선효과 제공.

❋ (사례) A 중소기업은 신용도가 양호한 B 수출자 앞으로 수출용원자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금 결제조건은 수출용원자재공급 후 90일입니다. 이 경우 A 중소기업은 수출용원자재 공급 후, 수출입은행의 외화매출채권매입을 통해 조기에 대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대출조건

구 분	주 요 내 용
대상기업	✺ 신용이 양호한 수출자와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고정적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수출용원자재 공급기업
대상 수출채권	✺ 수출용원자재 공급기업이 신용이 양호한 수출자에 대하여 수출용원자재 공급과 관련하여 보유한 결제기간 1년 이내의 외화표시매출채권
거래방식	✺ 공급물품의 하자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외화매출채권 매입시 매입대금의 80%에서 100%까지 선지급 ✺ 유보금은 수출자가 만기일에 공급대금을 결제하면 수출용원자재 공급기업 앞 지급
담보제공여부	✺ 만기일에 수출자로부터 공급대금이 회수되지 않더라도 수출용원자재 공급기업에게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 무소구조건이므로, 별도의 담보를 요구하지 않음
할인료율	✺ 할인료 : Libor + 가산율(%) * 수출자의 신용위험, 대금결제기간, 타 금융기관의 할인료율 수준, 시장관행 등을 감안하여 결정

○ 필요서류

- 수출용원자재 외화매출채권 매입신청서와 함께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다음의 관련 서류를 제시하고 외화매출채권을 양도하시면 됩니다.
  · 외화매출채권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출용원자재 공급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 세금계산서 원본 또는 외화매출채권의 채무자가 발행한 물품인수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 외화매출채권 양도관련 서류
    * 어음채권인 경우, 배서된 어음
    * 그 밖의 경우, 외화매출채권 양도증서 및 채무자 앞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대출절차

1. 대출상담	지원가능여부상담 기업방문 및 신용조사 재무재표 및 수출입실적 확인서류, 해외투자사업계획서 수출계약서 등
2. 신용평가	지원조건 확정/ 승인신청서류 접수 대출승인신청서
3. 대출신청	승인절차진행 대출승인에 필요한 기업신용정보
4. 대출승인	채권서류 안내 및 접수 대출계약서, 이사회의사록, 인감증명서, 담보관련서류 등
5. 대출계약체결	집행신청서류 접수/ 대출금 송금 대출집행신청서, 입금계좌사본 등
6. 대출 집행	

○ 담당자 안내

플랜트금융부	02-3779-6410
자원금융부(원유, 천연가스, 농업)	02-3779-6445
자원금융부(광물, 임업)	02-3779-6425
미래산업금융실(지식・문화 콘텐츠 산업)	02-3779-5264~5
미래산업금융실(방위 산업)	02-3779-5263, 5267
무역금융부	02-3779-6345
녹색성장금융부(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02-3779-6394, 6460
녹색성장금융부(원자력에너지)	02-3779-6466, 6473
녹색성장금융부(에너지효율향상-LED, 2차전지 등)	02-3779-5376~7
녹색성장금융부(환경산업-담수화, 수처리, 탈황 등)	02-3779-5377
선박금융부	02-3779-6336
해외투자금융부	02-3779-6427, 6429, 6459

해외진출컨설팅센터 안내

✺ 우리 기업의 해외 수출시장 개척과 글로벌경영체제 구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진출컨설팅 센터를 설치·운영, ONE-STOP으로 서비스 제공.

✺ 주요서비스내용

○ **수출입해외투자 금융상담**

○ **환 위험관리 자문(환율동향정보)**

* 실시간환율 / 시황정보시스템
* 환위험 관리컨설팅 서비스
* 선물환거래 서비스
* 통화전환옵션부 대출
* 환율상한옵션부 대출이란
* 환율고정부 대출
* 비금융분야 서비스
  - 환위험관리 진단 및 관리방안 제시
  - 환위험관리 실무 전문가 교육
  - 환위험관리 설명회

○ **국제계약 자문 및 영문계약서 작성**

* 국제계약상담실 운영

○ **해외국가 투자환경 정보**

* 해외투자절차, 분야별 전문컨설턴트 지정운영

1 환 위험관리 자문

○ 환 위험관리 자문(환율동향 정보제공)

가. 실시간환율 / 시황정보시스템

- 달러원, 달러엔 등 실시간 환율
- 일간 시황
- 외환시장 모니터 : 달러원 기준율, 금리, 3대 유가 차트 등
- 주요환율 추이 상세(차트) : 달러엔, 유로달러, 달러위안
- 국제통화 및 각국 주가

나. 환위험 관리컨설팅 서비스

- 환위험 관리 진단 및 실행계획 수립
- 환위험 및 관리에 대한 개념 확립
- 환위험 관리 실무 방법 습득
- 독자적인 환위험관리 의사 결정 능력 재고

다. 선물환거래 서비스

- 중소기업이 별도의 수수료 없이 선물환물(장차 수취할 외화의 원화 결제액)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확정하여 환율 하락에 따른 외화의 가치 하락을 방지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수출입은행의 단기수출자금대출, 단기 및 장기 포괄수출금융, 제작금융, 수입자금대출, 선수금환급보증을 이용하는 중소기업
기업별한도	대출 승인금액의 100% 이내 [최대 미화 20백만 달러] - 선수금환급보증은 승인금액의 50% 이내 (미화 1백만 달러 이하인 경우 100%이내)
운영방식	1년 이내에서 회전한도 방식 (단기포괄수출금융의 경우 6개월)
거래금액	대출취급일로부터 최장 6개월
대출집행방식	수출입은행이 대기업을 대신하여 중소협력기업에게 즉시 대금을 집행
수수료	무료
계약보증금	선물환거래 계약금액 X 1.0%~8.0% (단, 7일 이내 면제) - 신용대출한도 범위내 이용시에는 보증금 면제 가능
채권보전	신용취급

라. 통화전환옵션부 대출

· 대출 취급 후 대출만기 1개월 전까지 대출통화를 '외화↔원화' 또는 '외화↔여타 외화'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무상으로 부여하는 제도

지원대상	수출입은행의 포괄수출금융 및 수출중소기업 특례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중소기업
대상통화	원화 및 외화 (미달러화, 엔화, 유로화)
옵션 부여시점	대출 승인시
전환방법	대출기간 중 1회에 한정(대출만기일 1개월 전까지 가능)
수수료	무료
전환 후 금리	전환신청일의 해당통화에 적용되는 대출금리
전환환율	전환신청일의 매매기준율

마. 환율상한옵션부 대출

· 대출원금 상환시 적용되는 환율 상한선을 승인 시점에 미리 설정, 환율이 급등하더라도 대출금을 미리 정한 상환환율로 상환할 수 있도록 선택권(Option)을 부여하는 제도

지원대상	수출입은행의 포괄수출금융 및 수출중소기업 특례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중소기업
대상통화	원화 및 외화 (미달러화, 엔화, 유로화)
옵션 부여시점	대출 승인시
수수료	소정의 옵션수수료 부담(최초 대출집행 시점에 일괄 납부)

바. 환율고정부 대출

· 원금상환시 적용하는 환율을 수수료 부담없이 현재의 선물환율로 미리 고정, 대출원금 상환시점에 환율상승/하락과 관계없이 대출에 따른 환차손익을 고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수출입은행의 포괄수출금융 및 수출중소기업 특례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중소기업
대상통화	원화 및 외화 (미달러화, 엔화, 유로화)
수수료	무료
상환금액	대출금 집행일의 수출입은행 제공 선물환율로 환산

사. 비금융분야 서비스

· 환위험관리 진단 및 관리방안 제시

대 상	수출입은행 거래 중소기업
지원내용	현장을 방문하여 환위험 특성 및 문제점 분석
수행기관	환관리전문업체
컨설팅비	수출입은행이 60% 비용 부담

· 환위험관리 실무 전문가 교육

대 상	수출입은행 거래 중소기업
지원내용	환위험관리 개요, 설계방법, 파생상품을 이용한 헷지방법 등에 대한 이론 교육 및 실습
수행기관	환관리전문업체
컨설팅비	수출입은행이 50% 비용 부담

· 환위험관리 설명회

대 상	비수도권 지역 중소기업
지원내용	환위험관리 개요, 설계방법, 파생상품을 이용한 헷지방법 등에 대한 이론 교육
수행기관	환관리전문업체
컨설팅비	무료

2 해외직접투자정보 제공

○ 해외직접투자(개요)

- 해외직접투자는 투자대상기업의 경영에 직접 참가함을 목적으로 유형의 경영자원인 자본 및 인력뿐만 아니라 무형의 경영자원인 경영관리상의 경험과 지식, 노하우, 기술 등의 생산요소를 복합적으로 해외에 이전시키는 기업활동

가. 투자절차

해외사업의 구상 및 관련정보

- ✺ 사업목적 또는 진출동기의 구체화
- ✺ 진출대상국 및 업종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대상국 업종선정)
- ✺ 투자형태(단독, 합작, 합자), 투자방법(출자, 대부) 등의 결정
- ✺ 투자환경조사
- ✺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Feasibility Study), NPV, IRR, Sensitivity Analysis, Project Risk

사업계획서 및 관련 계약서의 입안

- ✺ 자금의 소요 및 조달
- ✺ 설비투자, 생산 및 판매
- ✺ 인력수급방법
- ✺ 투자자금 회수 및 차입금 상환 계획
- ✺ 합작투자계약서, 대부계약서, 현지법인의 정관 등 입안

관련기관과의 서면 합의

- ✺ 투자신고수리 관련협의 (외국환은행 본점, 외국은행 대표지점, 각국의 외국인 투자 유관기관
- ✺ 해외투자금융 지원요청 (필요시, 외국환은행본점, 외국은행 대표지점)
- ✺ 해외투자보험 청약상담 (필요시, 한국수출보험공사)
- ✺ 현지금융 또는 제3국금융 지원 협의

투자의향서 합의 및 관련기관과의 지원요청

- ✺ 합작투자의향서의 작성 및 합의 (합작투자의 경우)
- ✺ 현지 외국인투자 허가당국의 투자허가의향서 취득(단독투자의 경우)
- ✺ 해외투자자금대출 융자상담 (필요시, 외국환은행본점, 외국은행 대표지점)
- ✺ 해외투자보험 예비신청 (필요시, 한국수출보험공사)
- ✺ 관련기관의 추천서 등 취득(필요시)

본계약 체결 및 각종 인허가 취득

- ✺ 본계약 등 관계계약서 체결
- ✺ 현지정부의 외국인 투자허가 취득 (필요시)
- ✺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주채권은행, 여신최다은행 또는 거주자가 지정하는 은행)
- ✺ 해외투자자금 대출승인 (필요시, 한국수출보험공사)
- ✺ 관련기관의 추천서 등 취득 (필요시)

현지법인 설립 및 사업개시

- ✺투자자금 송금
- ✺현지법인 설립 (주식 및 대부채권 취득)
- ✺사업개시 (현지 공장건설 및 시험생산)

사업운영 및 투자 과실 회수

- ✺ 사업운영
- ✺ 배당 및 대출원리금 상환에 의한 투자과실 회수
- ✺ 해외직접투자 사후관리 (신고수리기관앞 보고서 제출)

현지법인의 청산

- ✺ 투자사업의 철수
- ✺ 잔여재산의 본국 송금
- ✺ 신고수리기관앞 청산보고 (즉시)

나.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제도

- 해외직접투자는 투자자 신용상태 및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업목적외 유출 등의 경우에는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따라서, 거래은행 등 이해관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정부의 정책 수립 및 집행에 활용토록하는 등의 면에서 신고수리제도의 중요성이 있음.

* [외국환거래규정] 제9-3조(해외직접투자의 지원 등)
재정경제부장관은 해외투자가 국내산업·국제수지·대외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투자유형·업종 또는 지역 등에 따라 투자 및 이에 대한 각종 지원을 제한하거나 우대 가능..

○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구분**

신규사업신고	해외직접투자를 신규로 하고자 할 경우의 신고. 단,「외국환거래규정」제9-5조 제7항의 채권회수의무가 면제된 채권의 외화채무증서 매입에 따른 외화증권취득신고 및 기존해외사업에 대한 증액투자신고도 신규사업신고에 준함
내용변경신고	투자금액·투자업종·투자비율·투자방법 등 기존신고수리내용의 변경, 또는 현지법인의 자회사나 손회사를 설립하고자하는 경우
회수신고	대부투자 원리금을 회수하였을 경우
청산신고	현지법인 청산후 잔여재산을 회수하였을 경우

○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구분**

- ✺ 통화 등 지급수단
- ✺ 현지법인 이익유보금
- ✺ 자본재 → 산업시설(선박, 차량, 항공기 등 포함)로서의 기계·기자재·부속품 등 및 농림수산업 발전에 필요한 가축·종자·수목·어구류. 단, 주무부장관이 당해 시설 최초 시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예비품 및 시설도입에 필요한 운임·보험료·기술·용역 등 포함
- ✺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산업재산권과 이에 준하는 기술 및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 ✺ 해외법인, 지점, 사무소 등의 청산 잔여재산
- ✺ 채권회수의무가 면제된 대외채권
- ✺ 국내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구분

다. 해외직접투자 절차도

라. 해외직접투자 융자제도

- 해외직접투자지원 전문은행인 수출입은행은 1976년부터 해외투자금융 업무를 시작하여 28년간 축적된 경험과 풍부한 투자환경자료를 보유하고 있음.
- 해외직접투자사업과 관련된 자금조달은 물론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와 해외직접투자 대상국 관련 정보의 입수까지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담당.

마. 정부간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 투자보장협정

- 전쟁, 수용, 송금제한 등 비상위험으로부터 해외직접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협정체결국간의 투자교류를 증진하고자 체결하는 협정
-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의 보장, 국유화 및 수용의 금지, 전쟁,폭동 등 긴급사태로 인한 손실의 보전, 투자원본 및 과실의 자유로운 송금보장, 투자분쟁 발생시 해결절차 등

* 시행국 (62개국)
  -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룩셈부르크경제동맹, 영국, 프랑스, 스리랑카, 세네갈, 헝가리, 튀니지아, 덴마크,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태국, 폴란드, 파키스탄, 몽골, 오스트리아, 러시아, 이탈리아, 중국, 우즈베키스탄, 리투아니아 베트남, 파라과이, 인도네시아, 루마니아, 터키, 스페인, 체코, 페루, 타지키스탄, 그리스, 인도, 핀랜드, 포루투갈, 라오스, 필리핀, 아르헨티나, 라트비아,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이집트, 볼리비아, 남아공, 스웨덴, 홍콩,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카타르, 칠레, 니카라과, 온두라스, 모로코, 알제리, 파나마, 엘살바도르, 멕시코,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일본

* 서명국 (9개국)
  - 자이르, 브라질, 이란, 탄자니아, 이스라엘,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트리니다드토바고

✺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국제적 조세처리의 단순화와 해외직접투자기업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국가간에 체결하는 협정
- 사업소득 : 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
- 부동산소득 : 부동산 소재국가에서 과세
- 해운 및 항공운수 : 거주국가에서 과세
- 배당 및 이자 : 양국에서 과세가능하나, 일방국에서는 일정비율(약 10~20% 범위)이내에서 과세
- 이중과세방지 : 일방국에서의 조세금액만큼 타국에서는 세금공제

* 시행국 (57개국)
  - 일본, 태국, 독일, 영국, 덴마크, 벨기에, 미국, 캐나다, 프랑스, 싱가포르, 네덜란드, 스위스, 핀란드, 스웨덴,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호주, 노르웨이, 방글라데시, 터키, 스리랑카, 인도, 필리핀, 룩셈부르크, 파키스탄, 오스트리아, 인도네시아, 튀니지아, 헝가리, 아일랜드, 브라질, 폴란드, 몽골, 이탈리아, 이집트, 중국, 루마니아, 베트남, 피지, 체코, 멕시코, 스페인, 불가리아,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스라엘, 포르투갈, 몰타, 파퓨아뉴기니, 그리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모로코, 우크라이나, 오스트리아

* 서명국 (7개국)
  - 슬로바키아, 네팔, 알제리, 미얀마, 칠레, 벨라루스, 크로아티아

○ 분야별 전문컨설턴트 지정운영

부서	세부분야	전문 컨설턴트 및 지역전문가			
		성명	직위	전화번호	E-MAIL
녹색성장금융	신재생에너지	황현식	책임심사역	(02)3779-5376	hshwang@koreaexim.go.kr
	원자력사업	하두철	선임심사역	(02)3779-6466	doo@koreaexim.go.kr
	에너지사업	최우영	책임심사역	(02)3779-5372	wychoi@koreaexim.go.kr
	GPP	서수진	선임심사역	(02)3779-6460	soojin_seo@koreaexim.go.kr
미래산업금융실	방산,고속철	송오순	선임심사역	(02)3779-5263	songoh@koreaexim.go.kr
	지식문화산업	박성호	책임심사역	(02)3779-5265	shp@koreaexim.go.kr
자원금융부	원유,천연가스	양구정	선임심사역	(02)3779-6445	kjyang@koreaexim.go.kr
	광물,농업	황은호	책임심사역	(02)3779-6425	eunwalks@koreaexim.go.kr
	임업	최 민	책임심사역	(02)3779-6439	minchoi77@koreaexim.go.kr
선박금융부	직대,보증/제작금융	이춘재	선임심사역	(02)3779-6328	jaylee@koreaexim.go.kr
	직대,외항,제작	이재원	책임심사역	(02)3779-6333	junsd@koreaexim.go.kr
플랜트금융부	P/F 수출금융	권원협	선임심사역	(02)3779-6395	whkwon@koreaexim.go.kr
	해외건설관련보증	김창원	책임심사역	(02)3779-6415	befree@koreaexim.go.kr
전대금융실	전대금융	안병호	선임심사역	(02)3779-6371	abh@koreaexim.go.kr
	투스텝복합금융	신주호	책임심사역	(02)3779-6366	chulin27@koreaexim.go.kr
무역금융부	무역금융	석진오	책임심사역	(02)3779-6488	greenbard@koreaexim.go.kr
	국제팩토링	채화정	책임심사역	(02)3779-6468	hwajeong@koreaexim.go.kr
	포괄수출금융,수입자금	남미성	선임심사역	(02)3779-6355	nam948@koreaexim.go.kr
중소기업금융부	상생금융	김영록	책임심사역	(02)3779-6302	yrkim@koreaexim.go.kr
	기계,금속	구본현	선임심사역	(02)3779-6303	bhkoo@koreaexim.go.kr
	석유,화학	김주환	책임심사역	(02)3779-6919	kimch@koreaexim.go.kr
	전기,전자	김용운	책임심사역	(02)3779-5304	ywkim@koreaexim.go.kr
해외투자금융부	국제투자	정창환	선임심사역	(02)3779-6431	jch@koreaexim.go.kr
	투자사업금융	진사은	책임심사역	(02)3779-6429	sasilver@koreaexim.go.kr
경협지원실	구매지원,F/S 실시	유승욱	선임심사역	(02)3779-6794	willyryu@koreaexim.go.kr
아시아부	베트남, 미얀마	손종미	책임심사역	(02)3779-6617	phoenixfly@koreaexim.go.kr
	인니, 캄보디아, 중국등	이진희	책임심사역	(02)3779-6577	jhlee123@koreaexim.go.kr
	국제기구협조융자	김동혁	책임심사역	(02)3779-5670	stwall@koreaexim.go.kr
	PPP, 필리핀, 라오스	양종배	선임심사역	(02)3779-6602	jbyang@koreaexim.go.kr
중남미아프리카부	서남아	양혜영	책임심사역	(02)3779-6614	yanghy@koreaexim.go.kr
	아프리카	유광훈	선임심사역	(02)3779-5354	yu9128@koreaexim.go.kr
	중남미	최은경	책임심사역	(02)3779-6588	ericachoi@koreaexim.go.kr
남북협력사업부	남북금융	탁세령	선임심사역	(02)3779-5363	seryoung@koreaexim.go.kr
	교류협력	이현정	선임심사역	(02)3779-6629	hjelee@koreaexim.go.kr
	인도협력	김아영	책임심사역	(02)3779-6627	felicity@koreaexim.go.kr
법무실	국제계약상담	김채호	선임심사역	(02)3779-6506	wardingi@koreaexim.go.kr
		채승철	책임조사역	(02)3779-6505	chaesc@koreaexim.go.kr

○ 한국수출입은행내 전문가 현황

소속부서	국가/지역	전문가	소속부서	전화번호	E-MAIL
국별조사실	중국	김주영	수석조사역	(02)3779-5714	jykim@koreaexim.go.kr
	아시아	손승호	선임조사역	(02)3779-5703	aojai@koreaexim.go.kr
		도현철	책임조사역	(02)3779-5704	loki@koreaexim.go.kr
	CIS,동유럽	조양현	부실장	(02)3779-5707	yhjo@koreaexim.go.kr
		황상하	책임조사역	(02)3779-5711	hsangha@koreaexim.go.kr
	중남미	김영석	선임조사역	(02)3779-5718	claudio@koreaexim.go.kr
	중동, 아프리카	노승재	선임조사역	(02)3779-5726	sjnoh@koreaexim.go.kr

○ 국제계약 상담실 운영 안내

- 인력, 정보 등의 부족으로 국제거래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 내 뉴욕(New York)주 변호사 자격 소지 직원들로 구성된 국제계약 상담실을 설치하여 법률상담서비스 운영.

✺ 제공서비스

- 수출입 및 해외투자관련 영문계약서 검토 및 작성안내
- 수출입은행 대출업무 관련 법률상담
- 기타 국제거래 관련 법률상담

✺ 이용안내

- 상담시간 : 오전 9:00 ~ 오후 5:30
- 상담방법 : 서면 또는 구두상담
- 상 담 료 : 무료
- 법무실 연락처

Tel : 02-3779-6505 / Fax : 02-3779-6752

email : legal@koreaexim.go.kr

수출중소기업 상담센터 안내

✺ 상담센터가 위치한 인근 지역 본점 거래기업의 여신사후관리, 신규 마케팅, 환리스크관리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치 운영.

- 금융지원제도 안내 및 본점앞 여신지원 연계
- 본점 거래기업에 대한 여신 사후관리
- 환리스크 관리 방법 등 수출중소기업 앞 컨설팅 제공

✺ 문의처

Tel : 02-6248-6115 / Fax : 02-6248-6116 / email : shinykim@koreaexim.go.kr

국제개발 컨설팅 지원센터 안내

✺ 국제개발 컨설팅 지원센터는 국제개발기구(MDB)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서 실시하는 국제개발사업의 타당성검토(F/S), 설계, 감리 등 컨설팅 업무를 우리 기업들이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국제개발 사업에 관한 종합지원센터임.

✺ 문의처

- 컨설턴트풀 가입 및 해외원조시장 입찰정보 문의(Tel : 02-3779-5664)
- 사업참여 및 입찰 절차 문의 (Tel : 02-3779-6784/6606)